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4년1월1일)

별표 1. 2024년 재가기관 월 이용료

1) 장기요양서비스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00%)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월 한도액 (120%)	2,483,800	2,243,520	1,746,960	1,610,160	1,381,920	-

2) 이용료 및 월(20일기준)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금액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횟수를 곱한 후 절사한다.

① 방문요양

(단위: 원)

시 간	이 용 료		월 개인부담금		
	1일 기준	20일 기준(월)	15%	9%	6%
30분	16,630	332,600	49,890	29,930	19,950
60분	24,120	482,400	72,360	43,410	28,940
90분	32,510	650,200	97,530	58,510	39,010
120분	41,380	827,600	124,140	74,480	49,650
150분	48,250	965,000	144,750	86,850	57,900
180분	54,320	1,086,400	162,960	97,770	65,180
210분	60,530	1,210,600	181,590	108,950	72,630
240분	66,770	1,335,400	200,310	120,180	80,120

※ 이용료 산출근거 : 180분 20일 기준 54,320원 × 20일 = 1,086,400원

본인부담금 비용 15% 기준 = 162,960원

② 방문 목록

(단위: 원)

분 류	이용료		개인부담금		
	1회기준	월4회기준	15%	9%	6%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338,680	50,800	30,480	20,320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305,360	45,800	27,480	18,320
차량 미 이용	47,670	190,680	28,600	17,160	11,440

③ 방문 간 호

(단위: 원)

분 류	이용료(1회)	개인부담금		
		15%	9%	6%
15분~30분 미만	40,760	6,110	3,660	2,440
30분~60분 미만	51,110	7,660	4,590	3,060
60분 이상	61,490	9,224	5,530	3,68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 1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 9%

2.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식비 및 간식비용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에서 청구한다.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개인 생필품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 밖의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 2) 세부기준
 - 가) 식사재료비: 경관 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나) 등급 외 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납
 - 다) 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합니다.